

<b>보도</b>	<b>2026.7.1.(수) 15:00</b>	<b>배포</b>	2026.7.1.(수)		
<b>담당부서</b>	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기획팀	<b>책임자</b>	<b>실 장</b>	김지웅	(02-3145-7500)
		<b>담당자</b>	<b>팀 장</b>	박병일	(02-3145-8272)

## 금융감독원, **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**를 위한 **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**

### 주요 내용

- ◆ '26.7.1.(수)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국내은행 (20개사)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  -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신종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<sup>①</sup> 및 금융감독원 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주요 사례<sup>②</sup>를 공유하고,
    - ① 은행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회피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유적금계좌, 외화계좌, 법인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 집금 및 자금세탁 등
    - ②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 미흡,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등
  - 지능화·조직화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지속 강화 및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
- ◆ 참석은행들은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 발표 등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,
  -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
- ◆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AML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·공조할 계획임

## 1

### 간담회 개요

- '26.7.1.(수)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국내 은행(20개사)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에서 갈수록 지능화·조직화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최근 신종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 및 금융감독원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,
- 자금세탁방지 업무 시스템 고도화, 인력 확충 등 은행권의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필요성을 당부하는 한편, 업계의 업무 개선 우수사례,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음

####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요

- ▣ 일시 / 장소 : '26. 7. 1.(수) 15:00~16:00,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
- ▣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김형원 민생금융 부원장보, 자금세탁방지실장 (은행) 국내은행(20개사) 준법감시인·보고책임자

## 2

### 인사말 요지

- 김형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일반인 대상 사기범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도박, 마약 범죄 등도 증가하고 있으며,
-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도 가상자산, 해외송금, 법인 계좌, 외화계좌 등 다양화되고 있음을 설명
- 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금융시스템의 신뢰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, 국내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
- 특히, 범죄예방, 피해구제 및 범죄수익 보전 등을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·분석 AI 플랫폼(ASAP\*)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 당부
- \* 금융·통신·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

### 3

## 주요 논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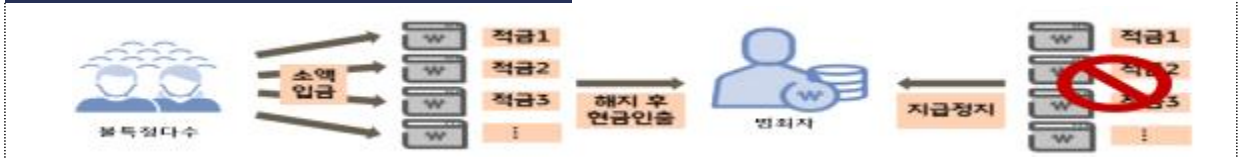
### 1. 최근 민생범죄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사례

- ◆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, **의심거래 모니터링 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금융거래**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
  - 다양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사례에 대하여 **고객확인 강화, 의심거래 적출률 업데이트 및 적극적인 의심거래 보고 등 요청**

- **(자유적금계좌 악용 증고거래 사기)** 자유적금계좌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 신규 계좌개설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 계좌개설이 가능해 증고거래 사기에 악용 가능

☞ 자유적금계좌 개설·해지를 일부 제한하고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등 AML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도(26.6.25. 보도자료)

#### ※ 자유적금계좌 관련 의심거래 사례



- **(법인체크카드 악용 상품권 자금세탁)** 사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하고, 다시 판매소에 상품권을 재판매·현금화를 통해 범죄 자금 세탁

☞ 금번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AML 대응방안 안내

- **(외화계좌를 경유한 자금세탁)** 원화계좌로 입금받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주식 거래 목적 등으로 위장하기 위해 타행 외화계좌,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쳐 다시 원화로 환전한 후 현금화

☞ 외화계좌 관련 의심거래 보고의 적정성 점검 및 일부 미흡 은행에 대한 시스템 개선 요청(6.1.)

#### ※ 외화계좌를 경유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사례



## 2. AML 검사시 주요 지적 사례

### ◆ 은행권 AML 검사 결과,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체계상 일부 미흡 사례 공유

- 주요 지적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점검 및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, 이를 통해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자율시정 당부

- **(휴대전화번호 활용 고객확인)**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의 개인고객 정보에 동일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대포통장 등 의심사례 다수 확인
  - 휴대전화 번호 중복 등록 사례 및 원인을 은행이 자체 점검하고 전산제어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 확인 강화
- **(고객위험평가)**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보유 고객의 상당수를 자금세탁 저위험 고객으로 평가하는 등 고객위험평가 운영 미흡
  - 사기이용계좌 등록 여부를 포함한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위험평가모형 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
- **(소비자보호 부서와 업무 연계)** FDS를 통해 사기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 등을 추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집하여 고객 확인 및 STR에 활용하는 절차 미비
  - 자금세탁방지·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
- **(AML전담인력)** 은행의 영업규모에 비례한 적정 규모의 자금세탁방지 인력 배치,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가 불충분한 사례
  - AML 전담인력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, 휴·퇴직 등으로 인력 이탈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원계획을 수립할 필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